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구정 '32.1.7차 (제화번호 375-290)	진경사령 진경사항						
처리기간	결재 1978.2.02 제2부서장	시 장						
시행일자	<i>[Handwritten Signature]</i>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2부서장 전직	법 조						
	도시정비국 김영환 도시정비담당관 김영환							
기안책임자	김영환 78.1. 제신갑	법무담당관(공고안심사)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 신						
동 계		검열 1978.2.02 서울특별시 시정서						
계 목	한지예정지 일부 변경 및 지정공고							
제1안	내부결재	공고 제 24						
<p>1. 사업 시행중에 있는 경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한지 예정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9호 (77.12.28)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한지계획 변경공람공고 하였던바, 당해 토지 소유자로 부터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바 있으나 별첨 의견서 처리 내용과 같이 받아 드릴수 없는 무관한 사항임으로 당초 한지계획 변경공고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거 한지 계획 변경인가와 동시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따라 한지예정지 지정공고</p>								
조 제 하 며	관인							
<p>2. 본 공고문의 신문 게재는 생략 하고 시보에 게재 하는 동시, 토지 소유자 및 관할 구청에 통보코져 합니다.</p>								
제2안	공고 (안)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tr> <td>1978.2.2</td> <td>제 10</td> </tr> <tr> <td>한지</td> <td>한지</td> </tr> <tr> <td>한지</td> <td>한지</td> </tr> </table>	1978.2.2	제 10	한지	한지	한지	한지
1978.2.2	제 10							
한지	한지							
한지	한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한지예정지 일부 변경 및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경계획을 변경코저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9(77.12.28)호로 공람 공고하고	
공람기간 종료 되었기 원지계획 변경 공고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이 외의 변경 인가	
하고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따라 한기이정지 지정하였거 공고 합니다.	
2. 한기이정지 지정세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	
정리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조서 송달은 토지 소유자 에게 별도 통보 알것이나, 미수령	
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춤 합니다.	
1978.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
2. 변경내역 :	강서구 신월동 일부 토지
3. 변경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들에게 비치)
제 3 안	
수신	중구 장충동 1 가 35-2 이상순
저록	동 건
1.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신월동 산 10번지 토지와 환지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규정 132.1-035호(78.1.16)	
로 취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받아드릴수 없는 사항임으로 당초 계획변경	
공고내용 대로 별첨공고문 사본과 같이 원지이정지 지정 공고 하였으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4 안	
수신	강서구청장 1010
참조	시민봉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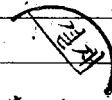
제목	동 건
1. 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원지예정지토 변경 지정하였거 통보하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일 것이며, 관계 도서를 정리 하여 업무 처리에 착오 없도록 바람.	
첨부	1. 원지예정지 변경 조서 각 1부. 2. 공고문 사본 1부.
제 5 안	
수신	도시행정과장
제목	동 건
1. 경인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 및 도서와 같이 원지예정지토 변경 지정 하였거 통보 하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으시게 바랍니다.	
첨부	1. 원지예정지 변경 도서 각 1부. 2. 공고문 사본 1부.
제 6 안	
수신	도시계획과장
제목	동 건
1. 서울시 고시 제 76호 (77.3.22) 및 제 176호(77.6.1)로 도시 계획 시설(학교) 결정된바 있는 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13-1구획 외 2구획 토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동 시설 결정 지역내 도토를 매지 하였거 통보하니, 업무 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원지변경도서 각 1부. 2. 공고문 사본 1부.
제 7 안	
수신	문화공보실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환지여정지 변경 지정 하였으나,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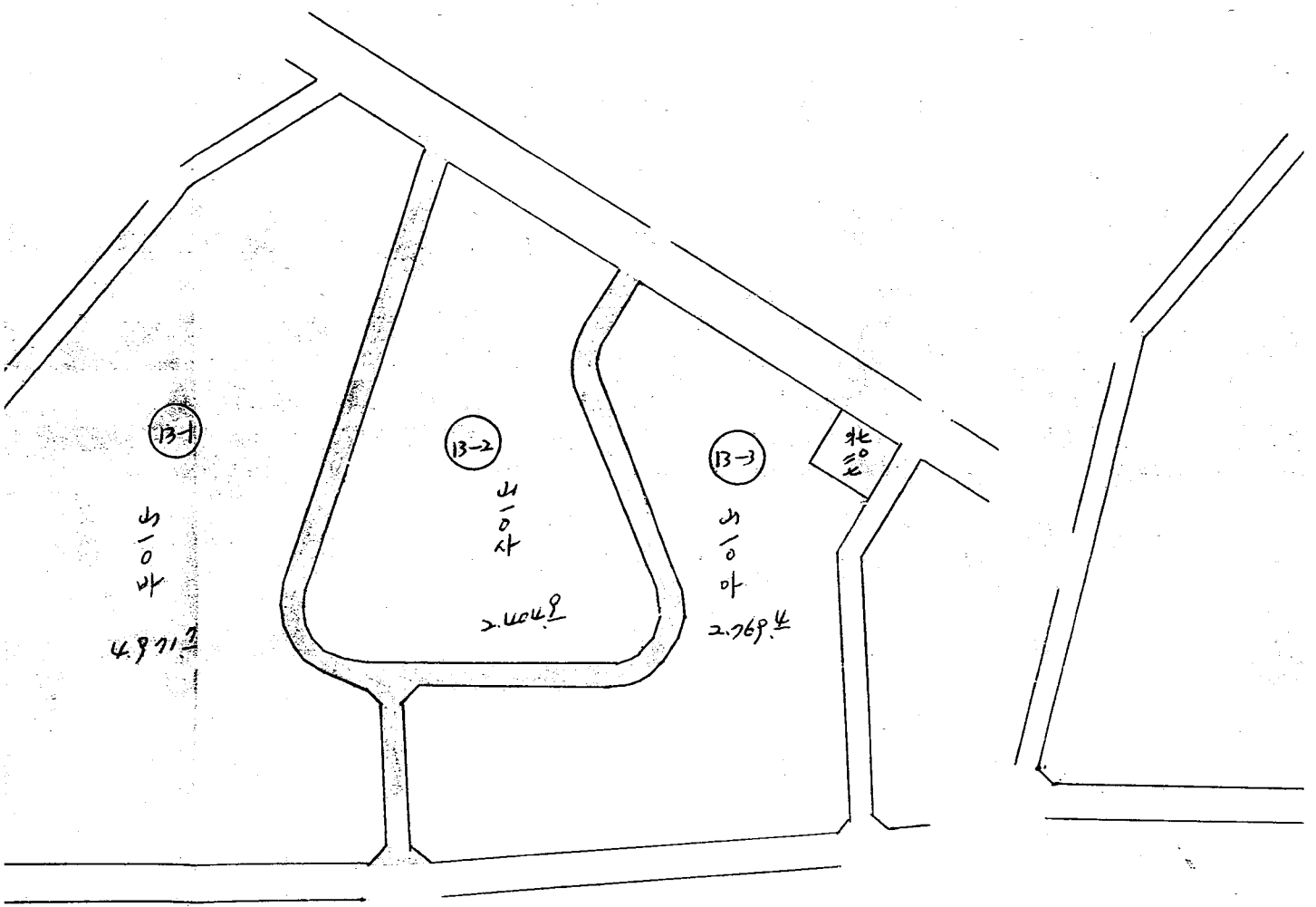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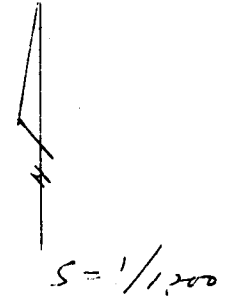
첨부 공고문 사본 2매. 끝.



환지에 정지 변경 (분할) 종서


종전의 토지				환 시				정 지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구획번호	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	교부	구획번호	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
신원	10	안	(4356) 26310	1가		472.5		5가		472.5			
				1가		86.4		17가		86.4			
				1가		53.1		17가		53.1			
				14		1572.3		14		1572.3			
				2가		384		2가		384			
				3가		714.5		3가		714.5			
				10가		219.5		10가		219.5			
				12가		492.7		13가					
				12가				14가		1014.5			36.5102
				13-2		2404.9							
				13-3		2760.4							
				11가		1601.2		11가		1601.2			
				12가		1338.2		12가		1338.2			
				14가		1722.4		14가		1722.4			
				14가		1034.4		44가		1034.4			
18가		700.5		18가		700.5							
38가		684.5		38가		684.5							
		계		24990.5		24990.5		24990.5					
제112								3-1 7가	609.2		124		

전 경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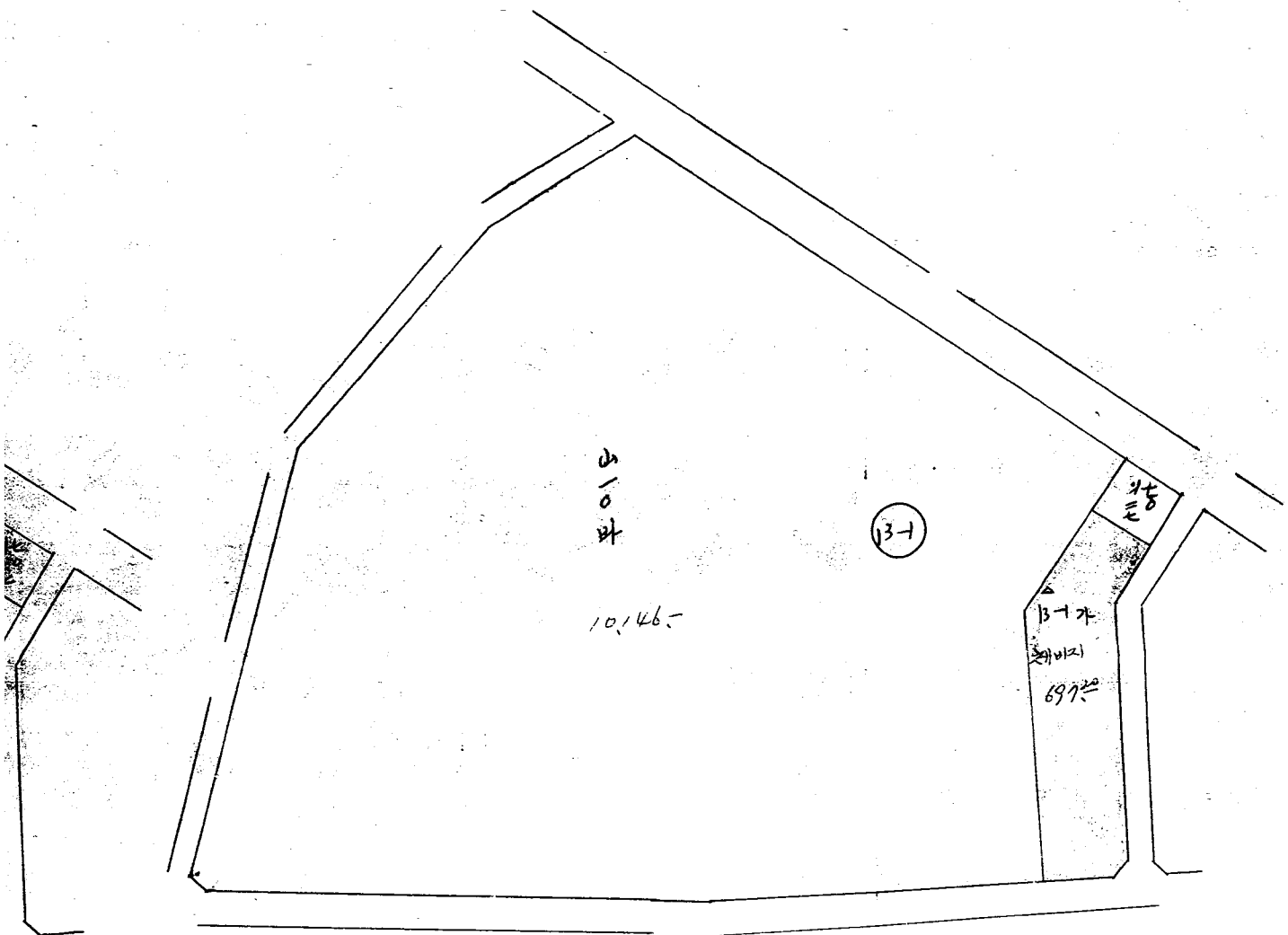


1014

1015


S = 1/1,200

변 경 후



77年度 放犬 困束

1. 捕縛

1,204 頭

2. 措置

가. 引渡 告発

816 頭

4. 撲殺

388 頭

※ 畜犬 統計

1016

76年末 209,000 頭

77" 129,000 "

△ 80,000 頭